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58

발의연월일: 2024. 11. .26

발 의 자 : 김 윤 • 권칠승 • 추미애

김남근 • 장종태 • 박홍배

김남희 • 박희승 • 전진숙

윤준병 • 천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. 이로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'합성 니코틴'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'담배'가 아닌 '공산품'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 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 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. 유해 물질 잔류랑은 합성 니코 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.

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'합성 니코틴'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 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법률 제 호

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"담배의"를 "담배 등의"로 한다.

제1조 중 "담배의"를 각각 "담배 등의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"담배"란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담배를"을 ""담배 등"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의"를 "담배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제조장에서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초"를 "연초"로, "첨가하는"을 "담배 등에 첨가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담배로부터"를 "담배 등으로부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"담배("을 "담배 등(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"담배의"를 "담배 등의"로 한다.

- 가.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담배
- 나.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(煙草)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 하거나, 씹거나,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
- 다.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 빨거나, 증

기로 흡입하거나, 씹거나,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

제3조 중 "담배의"를 "담배 등의"로 한다.

제4조 중 "담배의"를 "담배 등의"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"담배의"를 각각 "담배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"를 "담배 등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제1호·제2호·제3호 및 제5호 중 "담배의"를 각각 "담배 등의"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"담배 및 담배배출물"을 "담배 등 및 담배 등배출물"로 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·제5호·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3호 중 "담배의"를 각각 "담배 등의"로 한다.

제10조 중 "담배에"를 "담배 등에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"담배에"를 "담배 등에"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"담배의"를 각각 "담배 등의"로 한다. 제14조제1항 중 "담배 품목별"을 "담배 등 품목별"로 한다.

제15조 중 "담배 품목별"을 "담배 등 품목별"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"담배 검사기관의"를 "담배 등 검사기관의"로 한다. 제18조제2항 중 "담배를"을 "담배 등을"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담배의"를 "담배 등의"로 한다.

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

제2조 중 "담배에"를 "담배 등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 담배 등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률 제1조(목적) -----담배 등의--제1조(목적) 이 법은 담배의 유해 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-----담배 등의-----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담 ----담배 <u>등의</u>-----배의 위해(危害)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담배"란 「담배사업법」 제 1. "담배 등"이란 다음 각 목의 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.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-가. 「담배사업법」 제2조에 <신 설> 따른 담배 <신 설> 나.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(煙草)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 나, 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

<신 설>

- 2. "제조자등"이란 <u>「담배사업</u> 법」에 따른 담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를 말한다.
- 3. "담배첨가물"이란 <u>제조장에</u> 서 담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연초 및 니코틴 용액 이외에 <u>첨가하는</u> 일체의 물질을 말한 다.
- 4. "담배배출물"이란 <u>담배로부</u> <u>터</u>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을 말한다.
- 5. "담배성분"이란 <u>담배(</u>담배첨 가물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말한다.
- 6. · 7. (생략)
- 8. "담배의 유해성 관리"란 유해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분

	거나, 씹거나, 냄새 맡기에
	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
	다.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
	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,
	빨거나, 증기로 흡입하거
	나, 씹거나, 냄새 맡기에
	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
2.	담배 등의
3.	<u>연초</u>
	담배 등
	에 첨가되는
	<u>.</u>
4.	담배 <u>등</u>
	 으로부터
5.	담배 등(
6.	· 7. (현행과 같음)
	담배 등의
	

석하여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 하고, 유해성분 정보를 금연 정책에 활용하는 등의 제반활 동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<u>담배의</u> 유해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국가의 책무) 국가는 <u>담배</u> 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<u>담배의</u>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 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<u>담</u> 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 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 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후 제9조에 따른 <u>담</u> 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. 기본계획을

<u>.</u>
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<u>담배 등의</u>
<u>.</u>
· 제4조(국가의 책무) <u>담배</u>
<u>등의</u>
관한 기본계획) ①
<u>담배 등의</u>
· ②
등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-

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담배의 유해성 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- 2. <u>담배의</u> 유해성에 관한 조사·연구에 관한 사항
- 3. <u>담배의</u> 유해성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
- 4. (생략)
- 5. 그 밖에 <u>담배의</u> 유해성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(생 략)

제7조(조사·연구) ①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 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담배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조사·연구를 실시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기본계 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 다.

② (생략)

제9조(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의 구성·운영) ① 담배의 유

③
1. 담배 등의
2. <u>담배 등의</u>
3. <u>담배 등의</u>
4. (현행과 같음)
5 <u>담배 등의</u>
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조사·연구) ①
담배 등 및 담배 등배
<u> 출물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
의 구성·운영) ① <u>담배 등의</u> -

해성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원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담배유해성관리 정책위원회(이하 "정책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그 밖에 위원장이 <u>담배의</u> 유 해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
- ②·③ (생 략)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협의하여 임명 또 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 수가 되도록 한다.
- 1.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 무원으로서 <u>담배의</u> 유해성 관 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- 2. (생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담배 등의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4
·
1
2. (현행과 같음)

- 3. <u>담배의</u> 유해성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·⑥ (생 략)]10조(의견청취) 정책위원회는
- 제10조(의견청취) 정책위원회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, 전문 연구기관 및 제조자등을 포함한 관계 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제11조(유해성분의 정기검사) ①
 제조자등은 2년마다 연도 개시
 후 6개월 이내에 판매 중인 <u>단</u>
 배에 대하여 품목별로 유해성
 분의 함유량에 관한 검사를 제
 16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
 하여야 한다.
 - ② ~ ⑤ (생 략)
- 제12조(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) ① 제조자등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관한 자료(이하 "검사결과서등"이라 한다)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해당 <u>담배의</u> 제조에 사용된

3. <u>담배 등의</u>	
⑤·⑥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의견청취)	
- <u>담배 등에</u>	
	1
<u>담배 등에</u>	
	제
· 1담배 등의	

원료 및 담배첨가물 등에 포함된 성분의 명칭
2. (생략)
3. 그 밖에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② (생략)
제14조(유해성분 정보의 공개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을 검토한 후 담배 품목
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결 과서등을 검토한 후 <u>담배 품목</u> 별 유해성분에 관한 정보를 누 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 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5조(유해성분 정보의 활용) 보 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검사결과서등과 제14 조에 따른 <u>담배 품목별</u> 유해성 분에 관한 정보를 건강증진 정 책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16조(<u>담배 검사기관의</u> 지정) ① ~ ⑤ (생 략)

제18조(시정명령 등) ① (생 략)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

 2. (현행과 같음) 3 <u>담배 등의</u>
② (현행과 같음) 제14조(유해성분 정보의 공개) ①
담배 등 품
 <u>목별</u>
다메 드 표 다 버
<u>담배 등 품목별</u>
<u>.</u>
제16조(담배 등 검사기관의 지정)
①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시정명령 등) ① (현행과
같음) ②

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로서 국민건강에 위해가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단배를 회수 ·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21조(보고 및 출입・검사 등)

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고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담배의 제조·판매와 관련된 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. ② ~ ④ (생 략)

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 부칙

제2조(유해성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) 제조자등은 이 법 시

담
<u>.</u>
·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보고 및 출입・검사 등)
①
담배 등의
<u>П.Л. 0.1</u>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9815호 담배의 유해성
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
률 부칙
제2조(유해성분의 정기검사에 관
한 특례)

행	당시	판	매	중인	<u>담배</u> ㅇ	<u> 네</u> 대
하여	여는	0]	법	시 행	일부터	3개
월	이내	에 :	제11	조제	1항에	따른
검	사를 :	의뢰	하ㅇ	하	한다.	

<u>담배 등에</u> -